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해석 의원)

의안 번호	24-41
----------	-------

발의년월일: 2024. 4. .

발의자: 남해석, 고병준, 권영숙, 김승수
오욱자, 이상원

1. 개정이유

1회용품과 다회용품의 정의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통해 본 조례에서 쓰이고 있는 개념상 중요한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1회용품과 다회용품 관련 정의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4. 3. 26. ~ 2024. 4. 2.

나. 의견제출: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다.
2. “다회용품”이란 다회용기 등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구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우수업체 홍보사업
2.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다. 2. “다회용품”이란 다회용기 등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p>제5조(우수업체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체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우수업체 홍보 등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우수업체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구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우수업체 홍보사업 2.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차.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1)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2) 생활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와 지도·감독(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제외한다)	1) 생활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2) 생활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와 지도·감독(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4) 생활폐기물의 적정관리 조치 5)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지도

4) 광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6)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요율 결정
5)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7) 생활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신고수리 및 관리
6)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율 결정(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8) 생활폐기물 재활용신고의 수리 및 관리
7)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율 결정(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9) 폐기물 처리에 관한 보고·검사 등 조치명령
	10) 특별청소지역의 지정 및 조정
	11) 특별청소지역 내의 일반폐기물 수집·처리
	12) 특별청소지역 내의 분뇨사용 제한
	13) 분뇨·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
	14)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수리 및 관리
	15) 대청소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16) 공중화장실, 공중용 쓰레기용기 및 쓰레기 적환장(積換場: 매립장에 가기 전에 임시로 모아 두는 곳)의 설치·유지 관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타법개정]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2. 다회용기(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3. 28.]

[시행일: 2024. 3. 29.] 제10조의3

의원발의 조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시행일: 2024. 3. 29.]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에 따라 재정적 지원이나 자금 융자 등의 형태로 지원이 될 것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의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이창현
연 락 처	02-3153-9213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